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5. 8.

국토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2월 4일, 김예지의원 등 13인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2. 18.)

상정・제안설명・검토보고・대체토론・소위회부

제427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7. 16.)

상정・축조심사・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7. 21.)

상정・소위심사보고・대체토론・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국회의원 김예지)

현행 「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4 신설 등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임종수)

Ⅵ. 검토의견

3. 조류충돌 방지 전문인력 운영 등(김예지의원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7호, 조지연의원안 제56조의4)

가. 개정안의 내용

김예지의원안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, 조지연의원안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현 행	김예지의원안	조지연의원안
<신 설>	제56조의4(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의 운영 등)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,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 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운영의 기준 및	제56조의4(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)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의 수는 공항 운

현 행	김예지의원안	조지연의원안
	계획 수립의 시기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	영시간,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69조(과태료) ① ----------.	제69조(과태료) (현행과 같음)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7. 제5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	부 칙	부 칙
	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나. 검토의견

개정안은 현재 「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[1]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, 조류충돌 위험

1) 「공항시설법」
제31조(시설의 관리기준)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(이하 "시설관리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
「공항시설법 시행규칙」
제19조(시설의 관리기준 등)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"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

관리 계획의 수립 근거를 상향입법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장비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

[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44호, 2022. 11. 8., 일부개정.]

제8조(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)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,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) ① 공항운영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항 운영시간,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에 따라 적정한 조류 충돌예방 전담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되,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동시 이·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.5개로 보아 적용한다.

운영시간 / 적용 활주로 수	9시간이하	9시간 초과 18시간 이하	18시간 초과
1개	**4명**	8명	12명
1.5개	6명	**12명**	18명
2개	8명	16명	24명
2.5개	10명	20명	**30명**
3개	12명	24명	36명
3.5개	14명	28명	42명
4개	16명	32명	48명

제30조(조명탄의 사용) 조류 충돌예방용 조명탄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

정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"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.

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3. 10. 19.>

공항시설·비행장시설 관리기준(제19조제1항 관련)

10.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「국제민간항공조약」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(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)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·인원·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.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~ 5. (생 략) **제31조(총기류의 관리)**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는 규칙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, 총기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습기와 녹이 슬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**제32조(총기류의 안전관리)**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~ 8. (생 략) **제33조(폭음기의 안전관리)** 조류 충돌예방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특히, 지난 2월 6일 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류 충돌 위험관리 인력의 운용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음.

현재「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」의 법적 근거인「공항시설법」제31조[2]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데, 김예지의원안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수립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, 조지연의원안은 별도 제재를 규정하지 않았으나,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

---

2)「공항시설법」
제31조(시설의 관리기준)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(이하 "시설관리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
「공항시설법 시행규칙」
제19조(시설의 관리기준 등)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"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"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.
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3. 10. 19.>

공항시설·비행장시설 관리기준(제19조제1항 관련)

10. 공항 및 공항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「국제민간항공조약」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(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)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·인원·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.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다. 국토교통부 의견

김예지의원안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동의함.다만, 조류충돌 예방활동(전문인력 운영 등)은「공항시설법」제31조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안을「공항시설법」제31조의5로 신설하고, 같은 법 내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「공항시설법」제56조[3]와 동일하게 '조류충돌사고 방지'를 '조류충돌 예방'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--

3)「공항시설법」
제56조(금지행위) ⑤ <u>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</u>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·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생 략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

※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.